

'23년 육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1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

육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을 위한 1차 수시모집 및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목)

국 방 부 장 관

1 모집 계획

가. 모집부대 : 동원전력사령부 60사단 (경기도 고양) · 72사단 (경기도 양주),
군수사령부 3보급단 (인천 부평구)

나. 유형별 모집 직책 및 인원

- **유형 I (40~100일)** : 중 · 장기적 소집 및 숙달이 필요한 직책
- **유형 II (120~180일)** : 장기적 소집 및 숙달이 필요한 직책

1) 유형 I (40 ~ 100일) : 40 · 60 · 80 · 100일 중 복무일수 선택 가능

부대	소 속		직 책	계 급		병과(특기)	인원 (명)
	소속 1	소속 2		선발	지원가능		
60사단	사단 직할	전차대대	인사과장	대위	중위, 대위	기갑(120)	1
			군수과장	대위	중위, 대위	기갑(120)	1
			작전부사관	상사	하사~상사	기갑(121)	1
			통신부소대장	상사	하사~상사	정보통신(171)	1
			장갑차정비부사관	중사	하사, 중사	병기(222)	1
			궤도차량정비부사관	중사	하사, 중사	병기(222)	1
			통신장비부사관	중사	하사, 중사	정보통신(171)	1
			화포정비부사관	중사	하사, 중사	병기(222)	1
72사단	사단 직할	정보대대	정보대대장	중령	소령, 중령	정보(150)	1
			정보중대장	대위	중위, 대위	정보(150)	3
	보병여단	보병대대	본부중대장	중위	소위~대위	보병(110)	1
			소총소대장	중위	소위~대위	보병(110)	9
			박격포소대장	중위	소위~대위	보병(110)	3
			정찰소대장	중위	소위~대위	정보(150)	1
			통신부소대장	중사	하사, 중사	정보통신(171)	1

1) 유형 I (40 ~ 100일) 계속 : 40 · 60 · 80 · 100일 중 복무일수 선택 가능

소 속			직 책	계 급		병과(특기)	인원 (명)
부대	소속 1	소속 2		선발	지원가능		
72사단	포병여단	포병대대	전포대장	중위	소위~대위	포병(130)	3
			행정보급관	상사	하사~상사	포병(131)	1
			사제안전부사관	중사	하사, 중사	인사(311)	1
			포반장	중사	하사, 중사	포병(131)	3
			군수보급병	병장	병장	231.101	1
			견인화포정비병	병장	병장	131.105	3
	사단 직할	전차대대	전차화포정비병	병장	병장	222.102	3

2) 유형 II (120 ~ 180일) : 120 · 140 · 160 · 180일 중 복무일수 선택 가능

소 속			직 책	계 급		병과(특기)	인원 (명)
부대	소속 1	소속 2		선발	지원가능		
3보급단	2육로운영단 659유조자동차대대	본부중대	행정보급부사관	원사	중사~원사	수송(241)	1

다. 지원자격

1) 모집부대에서 장기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

* '23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

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 장
	중령	소령	중·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지원 가능	'70.1.1일 이후 출생자	'78.1.1일 이후 출생자	'80.1.1일 이후 출생자	'68.1.1일 이후 출생자	'70.1.1일 이후 출생자	'78.1.1일 이후 출생자	'83.1.1일 이후 출생자	0~8년차 예비군

2) 「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3)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방침보류자 중 41세 이상 간부는 지원 가능

4) 선발 후 '23. 5월 ~ '23.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 연 40일 ~ 180일 이내 훈련(복무) : 부대훈련계획에 따라 본인 희망 일수 복무

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예비군으로 성실하게 임무수행이 가능한 자

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 가)·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

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구분	선 발 계 급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지원 가능 계급	중령, 소령	소령, 대위	대위, 중위	중위, 대위, 소위	원사, 상사, 중사	상사, 중사, 하사	중사, 하사	하사, 중사, 병	병

* 관련근거 : 총무3700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

8) 해군 관할지역 거주자(김포 일부, 강화, 옹진군), 부대관리요원부대 전역자

(정보사, 항공사, 미사일사, 777사령부, 특전사 등),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업체, 지역예비군 소대장·부중대장 등)는 지원 불가

* 지역예비군 소대장·부중대장 : 병력동원지정 후순위조정 해지 후 지원 가능

(소속 예비군 읍·면·동대에 문의시 조치 가능)

9) 모집 직위의 유사특기자 지원 가능

구분	소요병과 (특기)	유 사 병 과 (특기)		
		1차	2차	3차
장교	보병 (110)	포병(130)	정보(150)	정보통신(170)
	기갑 (120)	포병(130)	보병(110)	방공(140)
	포병 (130)	방공(140)	기갑(120)	보병(110)
	정보 (150)	보병(110)	포병(130)	정보통신(170)
부사관	기갑 (121)	전차정비 (122)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
	포병 (131)	총포정비(222-426)	자주포정비(222-429)	.
	정보통신 (171)	특수통신 운용(174)	정보체계운용(175)	통신전자 정비(223)
	총포정비 (222 426)	전차/장갑차정비 (222 428)	야전포병 (131)	.
	전차/장갑차정비 (222 428)	차량정비 (224-436)	공병중장비정비 (224-437)	.
	수송운용 (241)	차량정비 (224 436)	공병장비운용정비 (163)	일반장비정비 (224 437)
병사	견인포 정비 (131 105)	화포정비 (222 102)	K-55 자주포정비 (131 106)	K-9자주포 화포/장갑 정비 (131 108)
	화포정비 (222 102)	자주포야전정비 (222 109)	대공포/유도무기정비 (221 101)	총기정비 (222 101)
	편성보급 (231 101)	지원보급 (231 103)	연료관리 (231 104)	물자근무지원 (231 106)

※ 비상근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직책·계급별 복무경험 및 임무수행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2 세부 계획

가. 선발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세부 내용
지원서 접수	'23. 3. 2.(목) ~ 3. 3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로그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작성 후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 제출 *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 붙임 #1 참고
신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방첩사령부(www.dcc.mil.kr) - 신원조사 서류제출 (홈페이지 중앙)에서 작성 *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면접	'23. 4. 12.(수) ~ 4. 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주관 : 지원부대 (60사단, 72사단) •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 *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무료발급)
합격자 발표	'23. 5. 1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및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예비군 홈페이지에 게시

나. 훈련 (복무)

1) '23. 2월 ~ 12월 중 40일 ~ 180일 이내

* 훈련(복무) 소집은 대대급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

구 분	유형 I				유형 II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40일	160일	180일
週	1회 이내	1~2회		2 ~ 3회	2 ~ 3회		3~4회	

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

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

4)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 (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 심의 과정을 거쳐 비상근예비군 선발(복무) 해지 가능

- 5)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 계획에 따라 동원(쌍룡)훈련, BCTP 등 각종 전술훈련 및 단기 비상근 예비군 소집훈련 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
 - *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원(쌍룡)훈련 등 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 사전 지정
- 6) 훈련(복무) 시 급식 제공, 숙소 미제공(동원훈련 등 연속된 훈련은 부대 숙영)
- 7)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과 연가는 제공하지 않음

다. 보상비 / 혜택

1) 보상비 : 1일 15만원 지급

- * 단, 연차 이내자(간부 : 1~6년차, 병 : 1~4년차)는 동원훈련 참석시 '23년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2박 3일 기준 / 82,000원)을 지급

2) 혜택

- 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 소속부대 복지회관 이용 가능
- 나) 개인 전투복·전투화 등 피복 지급
- 다) 소집기간 중 군병원 진료(치료, 투약 등) 가능
- 라)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
- 마)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바) 1년 단위 훈련(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
 - * 장기 비상근예비군이 동일 직책 재복무 희망시 우선 선발(소요 계급·병과 일치시)

3 유의사항

가. 예비군 홈페이지(비상근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 1) 본인의 계급, 병과,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
- 2) 본인이 지원할 직책의 유형(I·II)을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선택
 - * 예 1) 60사단(사단 직할, 전차대대) 장갑차정비부사관 희망 시 ⇨ 40, 60, 80, 100일 중 선택
 - * 예 2) 3보급단(669유조차동차대대, 본부중대) 행정보급부사관 희망 시 ⇨ 120, 140, 160, 180일 중 선택

- 나.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 다.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심의 결과는 직책별 예비 합격자 1명을 포함하여 발표하며, 합격자 포기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
 -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육군본부(동원참모부), 동원전력사령부(훈련과), 60·72사단, 군수사 3보급단 비상근예비군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처

- 가.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 나.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27
- 다.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참모처 : 031-329-3385
- 라. 제60보병사단 작전참모처 : 02-350-6309
- 마. 제72보병사단 작전참모처 : 031-869-7911
- 바. 군수사령부 3보급단 : 032-526-7201

* 참고법령

- 병역법 제 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

- 군인사법 제 10조 (결격사유)

-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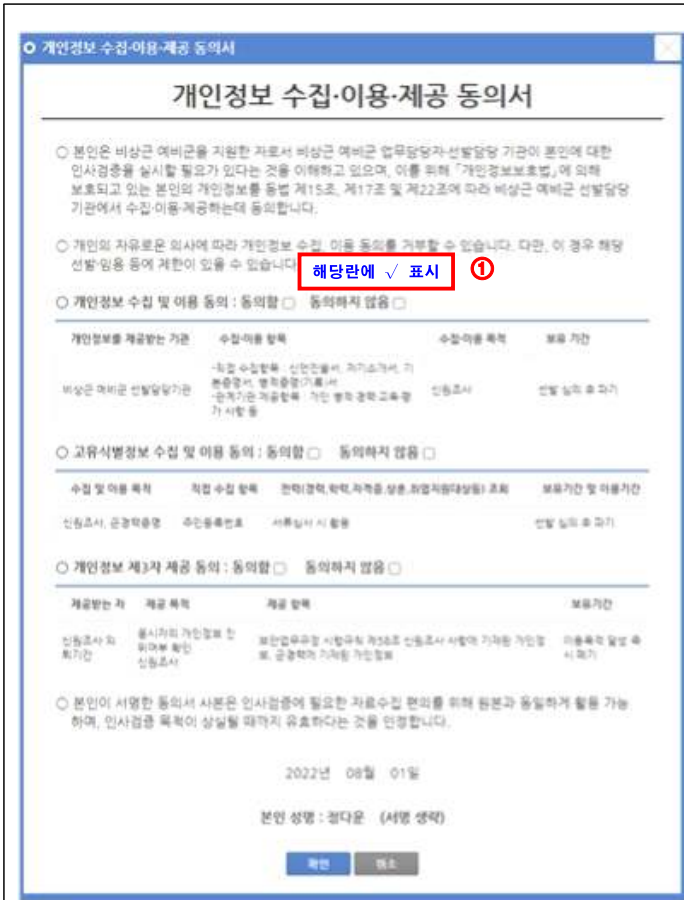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1.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
- ① 로그인 : 간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 ②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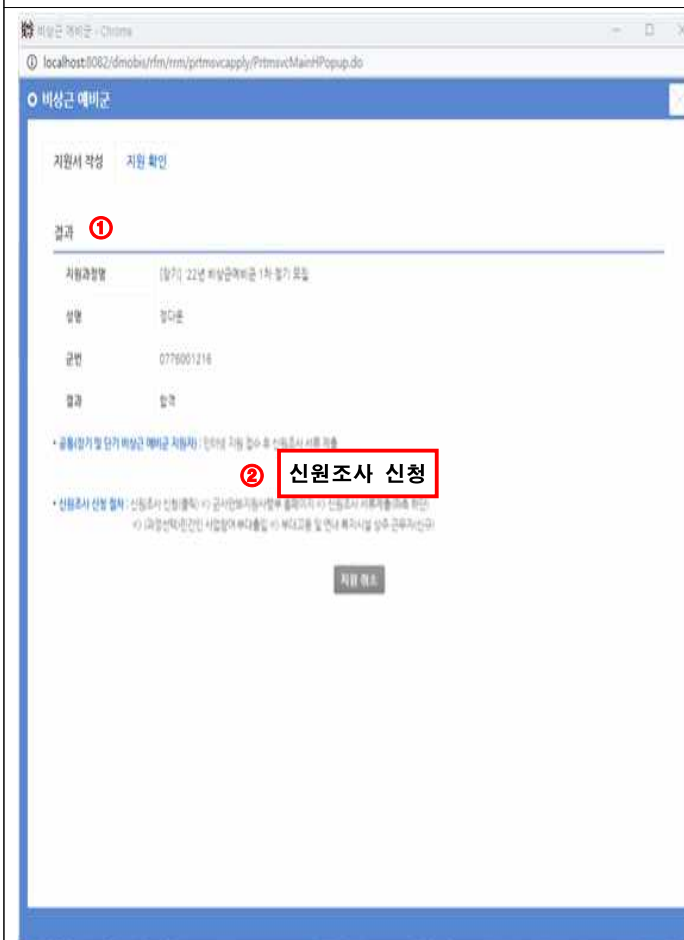
2. 지원서 작성
 - ① 개인 신상 작성
*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
 - ② 군 주요 보직
* 본인의 군 경력 입력
(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육군 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
 - ③ 비상근 복무
* 비상근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 및 부대 입력
 - ④ 비상근 신청
*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부대, 직책(유형)을 확인 후 1~3지망, 복무일수 선택
*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 모집공고의 계급, 병과가 상이할 경우 미선발될 수 있음.
- ※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3.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

*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



4. 지원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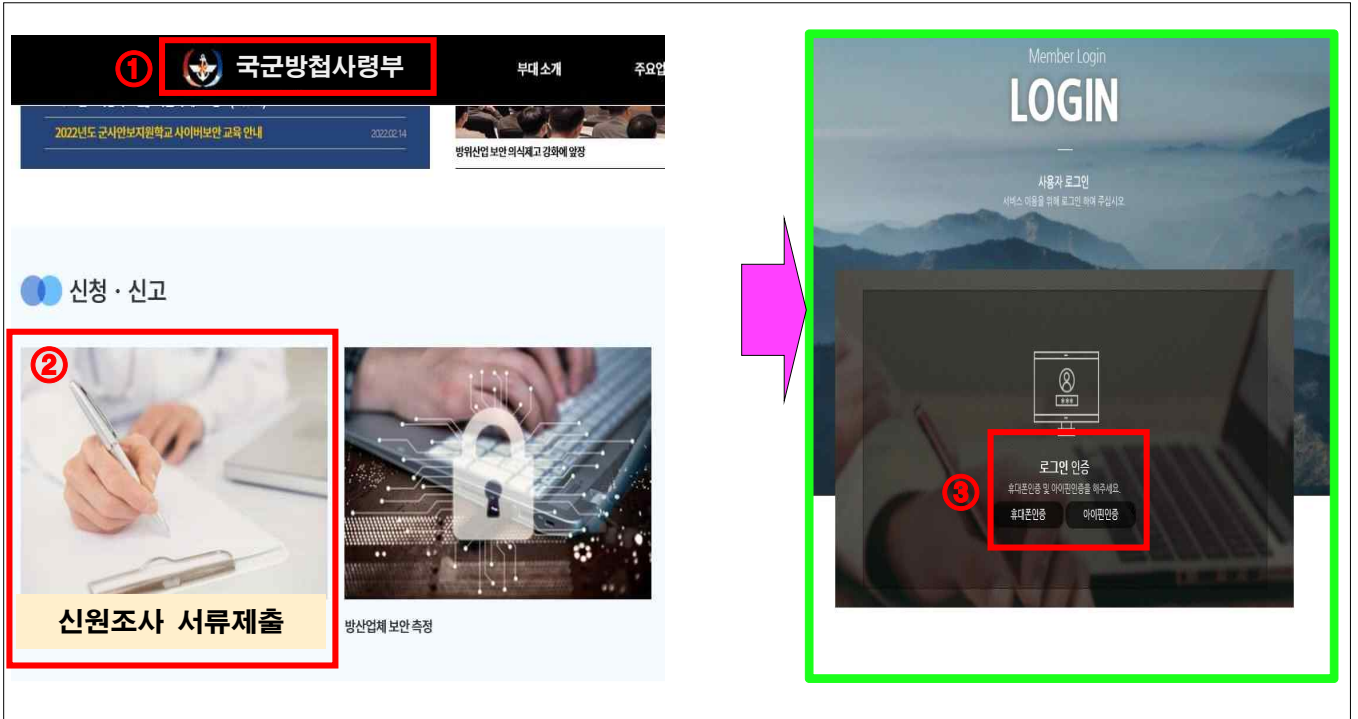
- 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 확인

- 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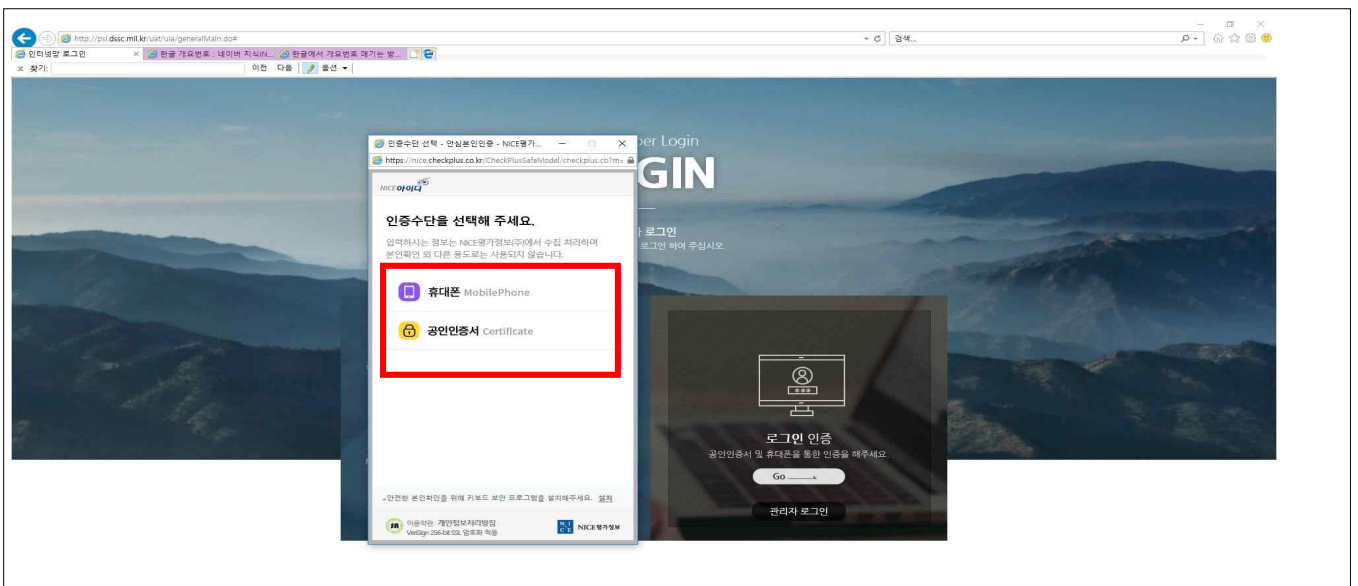
* 비상근예비군 복무를 위해 신원조사가 꼭 필요.

신원조사 서류제출

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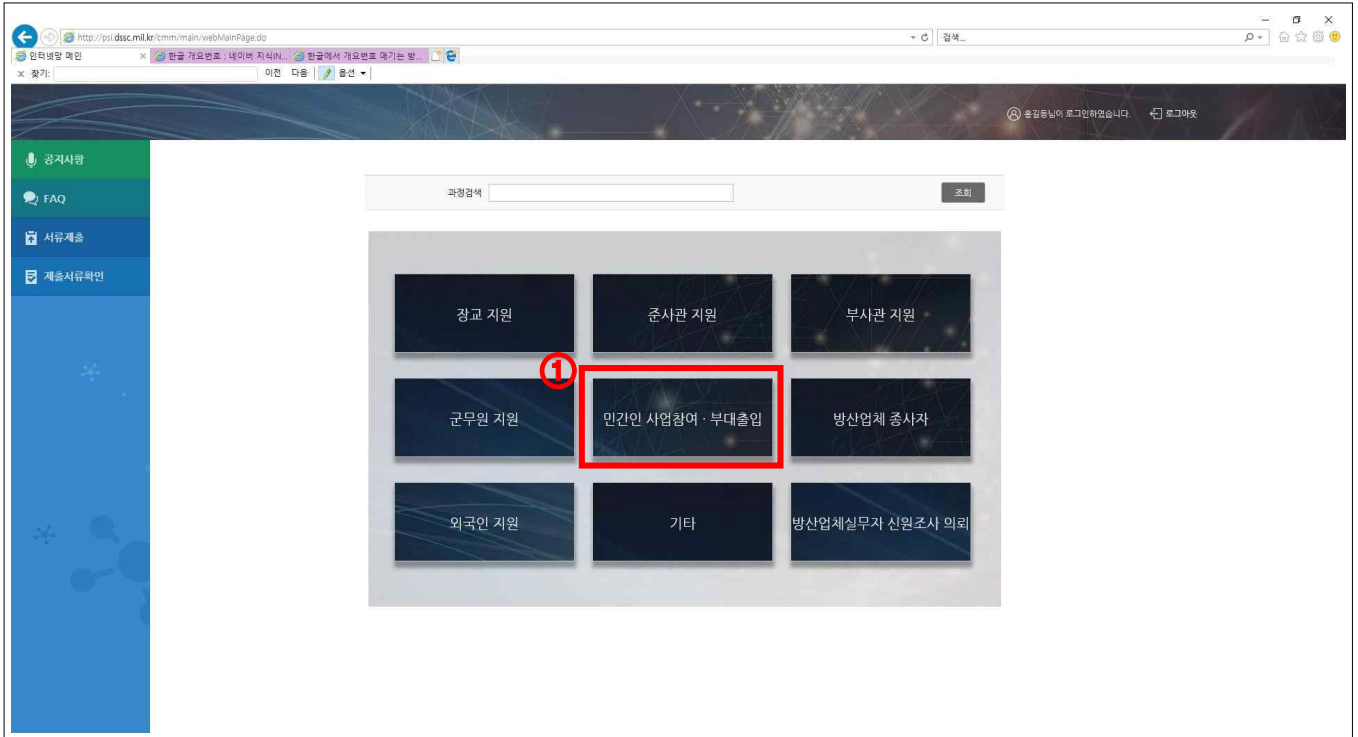
- 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 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내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 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

2

과정선택



① “민간인 사업참여 · 부대출입” 선택

과정조회

민간인 사업참여 · 부대출입 과정명 조회

과정명	제출시작일	제출종료일	제출
정보통신 기반체계 유지·보수 업체 직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① 계약 및 재채용인(외국인 포함) 계약전 재조사	2022-12-06	2099-12-31	제출
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자	2023-02-27	2099-12-31	제출
보안시스템 연구개발자, 정보통신체계 유지·보수 업체 직원, 부대출입, 비밀공사 참여 등으로 신원조사 후 3년 경과자	2022-12-06	2099-12-31	제출
비밀취급인가	2022-12-06	2099-12-31	제출
부대 고용 직원 및 영내 복지시설 상주 근무자 중 군사보호(통제·제한)구역 출입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군사보안시설 1개월 이상 출입 민간인	2022-12-06	2099-12-31	제출
비밀공사 참여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보안시스템 연구개발 및 취급자(신규)	2022-12-06	2099-12-31	제출
DMZ 출입인원	2022-12-06	2099-12-31	제출

① “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

3

서류제출

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 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② 제출

4

서류제출 확인

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